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4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득월액 산정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32인
- (2) 제 안 일 : 2024. 9. 20.
- (3) 회 부 일 : 2024. 9.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월액 산정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①·② (생략)	제71조(소득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이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 시행일: 2025. 1. 1.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9조¹⁾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 관련 근거를 규정하면서 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재산점수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71조에서는 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²⁾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⁴⁾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③ (생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text{연간 보수 외 소득} - \tex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imes 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

□ 개정안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1일 도입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⁵⁾의 산정근거인 ‘금융투자소득’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집합투자증권(펀드, ETF 등)의 환매소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식·채권 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및 각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로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

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4)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5)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며, 당초 2023. 1. 1.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되어 2025. 1. 1. 시행 예정에 있음.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⁶⁾에 따르면 금융
투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에서 제외되
어 별개로 규정되어 있어(분류과세)⁷⁾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2025. 1.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⁸⁾,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서 제외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의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비부과대상인 반면⁹⁾,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환매·양도이익, 파생

6)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금융투자소득

3. 양도소득

7)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경우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어 종합과세하여 소
득세법상 세율(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
로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함.

8) 서울경제, “금투세 도입땐 건강보험료도 뛰나” 재미들 혼란, 2024. 6. 2.자 기사

9) 보건복지부는 양도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시 양도소득의 경우 일회성 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 부과 타

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등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 소득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환매·양도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등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될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은 연 4,076억원 규모(2023년 기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금융상품 과세체계 >

투자 대상	주식		펀드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대주주 (50억, 1~2%)	일반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일반	기타 ETN	주식형 ETN	주가 지수형	기타
양도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소득	양도 소득	비과세	-	배당 소득	비과세	양도 소득	비과세
환매	-		배당 소득	배당 소득	-	배당 소득	배당 소득	배당 소득		
배당· 이자	배당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과세체계 >

투자 대상	주식 (연간 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	펀드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일반	기타 ETN	주식형 ETN	주가 지수형	기타
양도	금융투자 소득							
환매								
배당· 이자	배당소득		이자 소득					

자료: 기획재정부

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측면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일괄적인 건강보험료 미부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 >

(단위: 억원, 개월)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수입	988,955	1,045,611	1,115,354	1,183,196	1,252,201
총 지출	962,553	1,040,978	1,118,426	1,191,091	1,268,037
당기수지	26,402	4,633	△ 3,072	△ 7,895	△ 15,836
준비금	306,379	311,012	307,940	300,045	284,209
(지급가능월수)	(3.8개월)	(3.6개월)	(3.3개월)	(3.0개월)	(2.7개월)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이 제출되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법률안들의 논의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3518)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있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현재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어 있던 집합투자기구(펀드, ETF 등) 환매·양도 이익 등 배당소득 중 일부가 보험료 비부과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연 4,076억 원 예상)이 예상됨.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과세체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융투자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바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보험료 부과대상인 배당소득 중 일부가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연 4,076억 원)가 예상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손실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금융투자소득을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가입자 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융투자소득도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투자소득을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재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